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11,429,108	30,342,873
일반회계	935,278,357	28,058,351
특별회계	76,150,751	2,284,523
공기업특별회계	72,104,972	2,163,149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3,798,377	1,313,95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306,595	849,198
기타특별회계	4,045,779	121,373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398,097	71,943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392,259	41,76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55,423	7,66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1년 재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0년 명시이월 사업은 불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20년 사고이월 사업은 불임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437,618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9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